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2. 9 선고 2021가단803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2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남양주시 C 임야 10,81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~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
지상 벽돌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66㎡를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,
나. 2011. 5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송현

별지